KOMSA 채용 자격요건 체크리스트

□ 공 통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공통 요건	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만 60세) 미만이다.	□	
	(남성)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되었다.	□	
	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.	□	
	공고문 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	□	
상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			

□ 검사직(선체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해양계·수산계·조선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관련분야에서 **2년 이상** 근무한 경력(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졸업 이후 4년 이상)이 있다. * 판단기준 : 해양·수산·조선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* 승무경력 인정	□	
요건 2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해양계·수산계·조선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을 보유하였다. * 대행검사기관 : 선급법인	□	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
요건 3	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다. *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관	□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4	**3급항해사**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**3년 이상** 근무한 경력이 있다. * 산정 제외 : 3급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: (승선)승무경력증명서 또는 (승선外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(승선)순수승선일(**유급휴가 적용제외**)	□	
요건 5	조선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였다.	□	
요건 6	조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.	□	
요건 7	조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하였다.	□	
상기 7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□ 검사직(기관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기관·기계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관련분야에서 **2년 이상** 근무한 경력(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졸업 이후 4년 이상)이 있다. * 판단기준 : 기관·기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* 승무경력 인정	□	
요건 2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기관·기계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을 보유하였다. * 대행검사기관 : 선급법인	□	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
요건 3	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다. *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검사관	□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4	**3급기관사**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**3년 이상** 근무한 경력이 있다. * 산정 제외 : 3급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: (승선)승무경력증명서 또는 (승선外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(승선)순수승선일(**유급휴가 적용제외**)	□	
요건 5	기계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.	□	
요건 6	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.	□	
상기 6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□ 검사직(전문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금속, 전기·전자, 통신, 생물, 환경, 화학, 화공, 물리 또는 해양학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(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졸업 이후 4년 이상)이 있다. * 판단기준 : 기관·기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* 승무경력 인정	□	
요건 2	① 대학(또는 전문대학)의 **금속, 전기·전자, 통신, 생물, 환경, 화학, 화공, 물리 또는 해양학**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	② ①에 따른 졸업일 이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을 보유하였다. * 대행검사기관 : 선급법인	□	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
상기 2개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* 기관공학 전공자가 선체검사원 응시한 경우 불합격
* 기관(기계) 관련 학과 졸업한 자가 전문검사원 응시한 경우 불합격
* 해양학(Oceanography) 관련 학과는 승선학과에 해당하지 않음

□ 운항관리직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요건 1	① **3급 이상**의 해기사(항해사, 기관사 또는 운항사) 자격을 취득하였다. * 면허 종류 무관(어선 포함) *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실효된 경우, 재발급 필요 (공고마감일 전까지)	□	
	② ①에 따른 해기사 자격 취득일 이후 승선경력이 **3년** 이상이다. * 산정 제외 : 3급 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경력 * 판단기준 : 승무(승함)경력증명서 * 경력기준 : **유급휴가일수 포함**	□	유급휴가 산정 「선원법」 제70조
상기의 요건을 갖춘 사람			

* 산정 : 승선경력(승무경력증명서 상 총 경력) - 3급 미만경력 + 유급휴가일 ≥ 36개월

□ 연구직(예시, 채용 분야별 상이), 계약직 일부(참고)

구분	점검 사항	확인	비 고
예시 1	① ○○분야의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다. * 판단기준: 대학졸업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 ▶ *학위취득일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*	□	학위 간 분야가 다른 경우 요건에 따른 학위만 인정*
예시 2	② ○○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* 판단기준: 학위증명서 상 전공 또는 학과명 (부전공 / 제2전공 인정)	□	
예시 3	③ **학사 학위**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* 경력(연구경력 포함)을 가진 사람 * 관련분야(예시) : 교통, 조선·해양, 기계, 데이터사이언스, 통계, 데이터분석, 전산(컴퓨터) ▶ *여기서 학사 학위는 관련분야와 무관함*	□	
예시 4	④ 학사 학위 이상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▶ *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*	□	

* **예시** 1에서 학사학위는 비관련 분야이면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요건 충족되는 경우 : 불인정
* **예시** 2에서 박사학위 취득자가 석사(다른분야), 박사(관련분야) 인 경우 : 불인정